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4. 노인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 6) 유기

5.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 시설종사자의 역할

- 1)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핀다.
- 2)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 3)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헐뜯,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 4)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역할

- 1)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 3)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 ☎ 1577-1389 (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